

예산전용 개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

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보고내용 : 2025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

※ 예산전용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변경,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하여 사용  
(목그룹 : 인건비-100, 물건비-200, 경상이전-300, 자본지출-400 등)

2025년 3분기 예산전용 내역 : 총 2건, 85백만원

- 전용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 서	사 업 명	통계목	예산액	감 액	증 액	승인일자	전용사유
합 계			△85,000	85,000			
금융 투자과 (1건)	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	국외업무여비	70,000	△30,000	-	'25.7.3.	서울투자진흥재단 직원 채용 대행사 선정을 위해 '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' 국외업무여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일부를 전용
	인베스트서울 운영	사무관리비	110,111	-	30,000		
산업 입지과 (1건)	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	사무관리비	807,480	△55,000	-	'25.9.24.	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발주
	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	시설비	118,060	-	55,000		